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69

2026. 2. 23.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2. 12. 윤석민 의원 등 13인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3.)

“원안가결”

2. 제안이유(제안설명: 대표발의자 윤석민 의원)

현행 조례상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제재 규정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부과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 제목, 용어의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8조의6)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의3)

다. 과태료부과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서용)

가. 조례개정 취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윤석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 임.

나. 검토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는 2025년 12월 69개 기초자치구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통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적정성 제고 등 5개 항목에 대해 개선방안을 권고했음.

○ 권익위에서는 강남구의회에서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구분이나 재량의 여지가 없이 과태료를 특정 금액(500만원, 300만원)만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타 지방의회와 비교하여 과태료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거나 위반의 내용에 비해 제재의 정도가 과도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에 관한 재량의 여지가 없는 등 제재 규정의 적정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3(과태료부과)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② · ③ · ④ (생 략)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개정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안 제2조 제5조, 제8조의6)** 안 제2조는 조제목의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을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제5조는 조문에서 “1이상”을 “1 이상”으로, 제8조의6은 “부과대상”을 “부과 대상”으로 각각 띄어쓰기를 정비한 것임.

- **(안 제8조의3)** 제1항에서는 인용한 법조문의 오류를 수정하고, “이하”를 금액에 추가하여 일률적으로 정한 과태료 금액에 재량의 여지를 부여한 것과, 제2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표로 마련한 것은 권익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제2항에서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는 **‘“의한다”가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는 뜻으로 쓰일 때는 “따른다”로 바꾼다’**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1]에 맞춰 “따른다”로 정비가 필요할 것임.

  *신설되는 별표1의 본문도 같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의4)** 조문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의 통보를 하면”을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으로 수정하는 것은 제8조의3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8조의6)** 제1항에서 조문의 “부과대상”을 “부과 대상”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것과 제2항에서 삭제된 항인 “제8조의4제2항”을 “제8조의4”로 정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여겨짐.

- **(안 제10조)** 조문의 “주의의무”를 “주의 의무”로 띄어쓰기

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열 번째 판, 78페이지

하는 것은 “주의의무”가 한자어 결합(注意 + 義務)으로 전문 법률 개념어[2]임을 감안하면 현행대로 붙여 쓰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기한을 어기거나, 증인으로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부과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일부 조문의 단어와 띄어쓰기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할 것임.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2) 민법 제681조, 제750조, 대법원 판례의 반복적 사용, 법학 교과서 및 실무 용어 등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석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9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윤석민·복진경·이성수·김형대·강을석·노애자·이동호·한윤수·김광심·황영각·김진경·이도희·전인수 의원(이상 13인)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서류 제출 및 출석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위반 행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는 제재 규정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바,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 부과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 제목, 용어의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8조의6)

나.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제8조의3)

다. 과태료부과 절차 명확화(안 제8조의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5항의”를 “법 제49조제4항의”로, “500만원”을 “500만원 이하”로, “300만원”을 “300만원 이하”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의4제1항 전단 중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의 통보를 하면”을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으로 한다.

제8조의6제1항 중 “부과대상”을 “부과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4제2항”을 “제8조의4”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를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별		부과 금액
서류제출 지연	2일 이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일 이상 ~ 5일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일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미제출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회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거부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 거부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2. 서류제출 지연일수 계산은 민법상 날짜 계산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생 략)	제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② (생 략)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 1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3(과태료부과)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의3(과태료부과) ① 법 제49조제4항의 ----------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신 설>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의4(과태료부과절차) ① 제8조의3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의 통보를 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의4(과태료부과절차) ①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 ----------. ----------
제8조의6(의장의 통보) ① 의장은 제8조의3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구청장은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6(의장의 통보) ① ---------- 부과 대상 ----------. ② ---------- 제8조의4----------.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생 략)	제10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현행과 같음)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제8조의3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 행위별		부과 금액
서류제출 지연	2일 이하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일 이상 ~ 5일 이하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일 이상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미제출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요구 불응	1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회 이상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 거부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증언 거부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비고〉 1.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말한다.
2. 서류제출 지연일수 계산은 민법상 날짜 계산법에 따른다.